

파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76
----------	------

제출년월일 : 2002. 8.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안이유

행정규제 관리실태 감사원 감사결과 불합리한 규제지적사항과 다가구주택 수도요금 가구분할조정과 관련하여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제도권고사항에 대하여 개정하고, 동일건물내의 업종적용에 있어 일괄적으로 높은요율의 업종 요금을 적용하던 사항을 개정하여 시민의 고충사항을 해소하고자 함.

□ 주요골자

- 가. 지방자치법에 규정하고 있는 사용료 징수에 따른 과태료처분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을 동 조례 목적에 삽입 (안 제1조)
- 나. 급수공사 신청시 설계수수료 선납조항을 납부조항으로 조정함 (안 제6조)
- 다. 급수공사비 선납금을 기정 기일내에 납부하지 않을경우 그 공사를 취소하던 것을 중지된 것으로 보고, 중지일은 기간 경과일부터 6월 이내로 하고 경과시 취소함. (안 제13조 제2항)
- 라. 급수공사비와 시설부담금을 동시에 납부하던 것을 납부방법을 시장이 따로 정함. (안 제14조 제1항)

- 마. 흡수정 이하의 장치설치는 수용가의 자율사항으로 폐지
(안 제16조)
- 바.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수용가의 신청이 있는 경우 가구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으며, 가구별계량기 보호함을 설외부에 설치하도록 규정함.(안 제19조)
- 사. 수도사용자의 관리상 책임에 있어 고용인과 동거인에 대하여는 제외 (안 제14조 제1항)
- 아. 급수중지를 한 경우에도 구경별 정액요금을 징수함 (안 제26조)
- 자. 1개의 수도계량기로 영업용(또는 업무용)과 1가구 이상 가정용 수도를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 월 합산 사용량을 기준으로 15톤 이하인 경우는 가정용으로, 15톤을 넘을 경우 넘는 양은 영업용(또는 업무용)으로 함. (안 제29조 제3항)
- 차. 2호이상의 공동주택에 단일계량기로 급수되는 가구의 수도요금 가구분할 조정시 사실상 거주하는 가구나 호수 또는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가구로 함. (안 제31조 제3항)
- 카. 일시급수사용시 요금을 선납하도록 규정한 것을 사용후 납부하도록 조정함. (안 제38조)
- 타. 급수장치의 검사 및 보수는 급수공급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만 가능하도록 개정함. (안 제41조)
- 파. 정수처분중 기타 규칙에서 정한규정을 위반하거나 불복한 자로 개정함. (안 제43조제1항제13호)

파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파주시수도급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수도법” 앞에 “지방자치법과” 를 삽입한다.

제6조 제2항 및 제3항중 “선납” 을 “납부“ 로 한다.

제13조 제2항중 “취소한” 을 “중지된”으로 하고,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그 중지기간은 공사비 납부 경과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하며, 기간경과시 취소한 것으로 본다.

제14조 제1항중 “시설부담금을 제13조 규정의 공사비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를 “시설부담금과 제13조 규정의 공사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로 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제1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20가구 미만의 공동주택의 경우 수용가의 신청에 따라 가구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각 가구별로 수도계량기 보호함을 실외부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23조 제4항중 “그의 가족, 고용인, 동거인의 행위에 대하여도” 를 “그의 가족행위에 대하여” 로 한다.

제26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급수중지를 한 경우에도 구정별 정액요금을 징수한다.

제2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1개의 수도계량기로 영업용(또는 업무용)과 가정용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 그 월 사용량은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한다.

1. 가구당 월 사용량이 15톤보다 많을 경우 : 15톤까지는 가정용으로 하고 초과 사용량은 영업용(또는 업무용) 적용
2. 가구당 월 사용량이 15톤과 같거나 적은 경우 : 가정용으로 적용

제31조 제3항중 “사실상 거주 사용하고 주민등록 신고가 되어있는 가구”를 “사실상 거주하는 가구나 호수 또는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가구”로 한다.

제3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8조(일시급수 사용요금 징수방법) 시장은 기타 일시적으로 급수를 받고자 하는자에 대한 요금 및 가산금 징수는 제33조 및 제36조 규정에 의한다.

제41조중 “수도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을 “급수공급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로 한다.

제43조 제1항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기타 규칙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하거나 불복한 자.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29조 제3항의 업종적용은 조례 공포일 이후 다음달 최초의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소 관 실 · 과 · 소		상하수도과(☎940-4808)
입 안 자	상하수도과장	김 홍 식
	수도행정담당	변 석 기
	담 당 자	정 정 선

신 구조 문 대 비 표

현행	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과 수도법 ----- ----- -----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① (생략) ②제1항의 신청에 있어 급수공사 신청인은 설계수수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장치를 수선 또는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설계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③제2항에 의하여 선납된 설계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④~⑤ (생략)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① (현행과 같음) ② ----- 납부하여야 ----- ----- ③ ----- 납부된 ----- ----- ④~⑤ (현행과 같음)
제13조(공사비의 선납) ① (생략) ②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신설) ③ (생략)	제13조(공사비의 선납) ① (현행과 같음) ② ----- ----- 중지된 ----- . 다만, 그 중지기간은 공사비 납부 경과일로부터 6개월이내로 하며, 경과시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③ (현행과 같음)
제14조(시설부담금) ①전용급수장치와 시설공용 급수장치의 신설 또는 개조(급수관의 구경확대공사에 한한다)를 목적으로 급수공사를 하고자 할 때는 별표1의 시설부담금을 제13조 규정의 공사비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④ (생략)	제14조(시설부담금) ① ----- ----- ----- -----시설부담금과 제13조 규정의 공사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④ (현행과 같음)

신 구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제16조(흡수정 이하의 장치설치) ①시장이 따로 정하는 수도사용자들은 흡수정 이하 의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흡수정 이하의 장치 설치공사에 있어서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대행업자로 하여금 시행하 게 할 수 있다. 제19조(수도의 사용)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3조(수도사용자들의 관리상의 책임) ①~③ (생략) ④수도사용자들은 그의 가족, 고용인, 동거 인의 행위에 대하여도 자기의 행위가 아니 라는 이유로 이 조리에 규정한 책임을 면 할 수 없다. 제26조(급수중지 및 폐전) ①수도사용자들 은 필요에 의하여 시장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장치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제29조(업종의 구분) ①~② (생략) (신 설)	(삭 제) 제19조(수도의 사용) ①~② (현행과 같음) ③ 20가구미만의 공동주택의 경우 수용가 의 신청에 따라 가구별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각 가구별로 수도계량기 보호 함을 실외부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23조(수도사용자들의 관리상의 책임) ①~③ (현행과 같음) ④수도사용자들은 그의 가족 행위에 대하여 ----- ----- ----- 제26조(급수중지 및 폐전) ① ----- ----- ----- ②제1항에 의하여 급수중지를 한 경우에 구경변 정액요금을 징수한다. 제29조(업종의 구분) ①~② (현행과 같음) ③ 1개의 수도계량기로 영업용(또는 업무 용)과 가정용을 동시에 사용한 경우 그 원 사용량은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한다.

신 구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제31조(사용수량의 인정) ①~② (생략) ③1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의 분양단위)에서 단일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2가구 이상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 가구별 평균사용량에 대하여 가정용 요율을 적용하고, 2호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단일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분양단위)별 평균사용량에 대하여 가정용 요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를 사용 가구 해당 급수치에서 <u>사실상 거주 사용하고 주민등록 신고가 되어있는 가구를 말한다.</u> ④ (생 략) 제38조(일시급수사용 요금과 선납) ①시장은 기타 일시적으로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급수신청과 동시에 예정사용수량을 추정하여 해당사용량을 선납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 규정에 선납금을 수시 또는 급수 종료 후 이를 정산하되 그 과부족액은 다음달분 수도사용료로 증감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고지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1. 가구당 월 사용량이 15톤보다 많은 경우 : 15톤까지는 가정용으로 하고 초과사용량은 영업용(또는 업무용) 적용 2. 가구당 월 사용량이 15톤과 같거나 적은 경우 : 가정용으로 적용 제31조(사용수량의 인정) ①~② (현행과 같음) ③제1항의 ----- ----- ----- ----- ----- ----- ----- 급수치에서 <u>사실상 거주하는 가구나 호수 또는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가구를 말한다.</u> ④ (현행과 같음) 제38조(일시급수사용 요금 징수방법) 시장은 기타 일시적으로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한 요금 및 가산금 징수는 제33조 및 제36조 규정에 의한다.

신 구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제41조(급수장치의 검사 및 보수) 시장은 수도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급 수장치 특수가압시설 또는 흡수정이하의 장치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수도사용자등 에게 이의 개수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41조(급수장치의 검사 및 보수) ----- 급수공급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 ----- ----- ----- ---
제43조(정수처분) ① (생 략) 1~12 (생 략) 13. 기타 이 조례에 의한 규정 또는 지시 명령을 위반하거나 불복한 자 ② (생 략)	제43조(정수처분) ① (헌행과 같음) 1~12 (헌행과 같음) 13. 기타 규칙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하거 나 불복한 자 ② (헌행과 같음)